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383

발의연월일: 2020. 11. 16.

발 의 자:권영세·김성원·김용판

김은혜 • 박대수 • 조수진

정찬민 • 태영호 • 허은아

황보승희 · 윤희숙 · 성일종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토지·건축물·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 준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납세자들의 재산 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과도한 납세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조세법률주의 원 칙을 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특히 지난 11월 3일 발표된 '공시가 현실화 로드맵'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증가금액이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결과 향후 10년간 총 12조5,60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서민 중산층에 대한 막대한 증세부담이 예상됨.

이에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공

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비율을 인하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3년간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재산세 납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110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"을 "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항제1호 중 "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"를 "100분의 70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"를 "100분의 55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세표준에 관한 적용례) 제1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0조(과세표준) ① 토지・건축	제110조(과세표준) ①
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	
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	
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<u>부동산</u>	<u>다음 각 호</u>
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	의 구분에 따른
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	<u>.</u>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	
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	
액으로 한다.	
1. 토지 및 건축물: <u>시가표준액</u>	1 <u>100분의 70</u>
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	
<u>0까지</u>	
2. 주택: 시가표준액의 <u>100분의</u>	2100분의
40부터 100분의 80까지	<u>55</u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